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축산농협

2. 제재조치일 : 2018. 2.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서울축산농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1) 「YYYY년도 종합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소속 사무소의 보험영업 성과를 평가하면서 보험판매수수료만 고려하고 불완전판매 지표는 고려하지 않고*

*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성과평가지표에서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상품의 해지 등과 관련한 민원은 각 사무소에서 처리하므로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 금융영업점은 보험상품의 내용(금리, 보험료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상품을 기준으로 제작된 보험모집광고물*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 (예시) □□□□□□□종신보험 전단지 YY.MM월 개정상품, 최근 개정 ZZ.NN월
- 전단지상 공시이율 ▽.▽%, ZZ.NN월 개정시 공시이율 △.△%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영업점 및 소속 사무소의 보험영업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보완하고 보험모집 광고물은 최근 자료를 비치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보험회사와의 전산시스템 비용부담 기준 미비

서울축산농협은 보험상품 모집을 위해 OO보험회사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동 전산시스템의 회선비용만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을 뿐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비용은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 OO보험회사 등이 모두 부담

앞으로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시스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⑵ 3개 이상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절차 미흡

서울축산농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4항2호 바목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동 확인서의 보험상품 비교표에 3개 보험상품의 명칭만 기재하고 비교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목적,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공시이율, 배당여부,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부터 동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서명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상품 비교설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표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는 등 업무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부당 승환계약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미흡

서울축산농협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5호 및 제3항에 따라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미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면서,

(1) 동 농협이 모집한 새로운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계약 가입 및 해지여부만 조회하고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계약은 조회*하지 않고

* OO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시 → 기존 OO생보보험의 보험가입 및 해지여부만 조회
XX손해보험의 보험 모집시 → 기존 XX손해보험의 보험가입 및 해지여부만 조회 등

(2) 비교설명 안내문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명칭만 기재하고 비교대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서명을 받고 있으므로,

승환계약이 발생할 경우 보험상품 비교설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상품 모집시 동 농협이 모집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하고 비교설명 안내문에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는 등 업무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⑷ 부당 승환계약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미흡

서울축산농협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해당 계약이 동 농협 소속 모집인의 요구에 따라서 모집된 구속성 보험**이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전산 시스템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므로,

* '16.3.1.~'17.7.31. 기간중 4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동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